

TTC 표준적합표시 취급요령

89년 8월 21일 이사장 결정

92년 6월 29일 일부개정

1. 취급

(1) 상호접속시험실시 지침서 작성

TTC는 상호접속시험실시기관등(자체적으로 상호접속시험을 실시하는 것을 포함)에서, 상호접속시험대상기기(시스템)의 상호접속시험 실시 지침서에 대한 작성의뢰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TTC 표준 및 관련표준등(이하, TTC 표준등 이라한다)에 적합한 상호접속시험실시 지침서를 작성한다.

또, 상호접속시험실시 지침서가 작성되었을 때는, TTC는 신속하게 이것을 발행하고 입수를 희망하는 자에 대해, 적절한 가격으로 제공한다.

(2) 상호접속시험실시 지침서의 작성 절차

전항에서 결정한 상호접속시험실시 지침서의

작성에 대해서는, 상호접속시험실시 기관등이 작성한 상호접속시험실시 요령등을 근거로, 해당 TTC표준을 작성한 전문위원회가, 소속된 부문위원회의 심사 및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친다.

(3) 신고의 접수 및 통지

TTC는, 상호접속시험실시 제조업자등(이하, 『제조업자등』 이라한다) 이 단말기기(시스템)에 TTC 표준적합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상호접속시험실시기관등에서 행한 동시험의 결과를 첨부한 별표 1호에 나타난 양식 신고서를 사전에 제조업자 등으로 부터 접수한다.

TTC는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신소를 접수할 때, (2)항에서 작성한 상호접속시험실시 지침서에 의거한 시험이 실시되고, 소기의 시험결과가 표시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며, 해당 제조업

자등에 대해 TTC 표준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마크에 의한 표시 혹은 문장에 의한 표시를 한다.

(4) 표시방법

제조업자등은 해당 단말기(시스템)의 취급설명서, 카달로그등 선전용문서, 포장박스, 본체등에 TTC 표준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마크에 의한 표시 혹은 문장을 자주적 또는 임의로 표시하는 것으로 한다.

① 마크에 의한 표시

별표 2호의 양식에 따름.

- (a) 크기는 직경이 5mm 이상으로서
(재) 전기통신단말기심사협회의 『인정마크』와 동등이하로 할 것.
- (b) 재료는, 쉽게 손상되지 않는 것일 것.
- (c) 색채는, 적당한 것으로 한다.
단, 표시를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것일 것.
- (d) (재) 전기통신단말기 심사협회의 『인정마크』가 첨부된 동일한 명판에, 본 마크를 표시하는 경우, 위치는 동협회의 『인정마크』를 중심으로 해서 보았을때, 우측하단에 위치하도록 한다.

② 문장에 의한 표시

문장에 의한 표시는, 원칙적으로 아래의 각호 중 하나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단, 해당 TTC 표준번호는 제외할 수 있다.

- (a) 『TTC표준 J□-□□□□ 적합 (제품)』
- (b) 『TTC표준 J□-□□□□ 에 적합』
- (c) 『이 (제품)은 TTC표준 J□-□□□□에 적합합니다.』
- (d) 『이 (제품)은 (사) 전신전화기술위원회에서 제정한 TTC표준 J□-□□□□에 적합합니다』

- (e) 『이 (제품)은 (사) 전신전화기술위원회에서 작성한 상호접속시험실시 지침서 □□□□□□□□에 근거해서 상호접속성이 확인되어 있습니다.』

또한, 참고로 취급설명서 등의 기술예를 다음에 나타낸다.

『본 제품은, TTC표준 (J□-□□□□)에 적합하며, 동 표준에 적합한 기본 통신기능에 대해서 상호접속성이 확인되어 있습니다.』

(또한 Optional한 기능 혹은 본 제품에 독자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반드시 타사 제품과의 상호접속성은 확인되어 있지 않다.)

주; ()내의 표현에 대해서는 제외할 수 있다.

(5) 주지

TTC는 TTC표준적합 단말기(시스템)의 주지를 아래와 같이 한다.

- ① 회 원 : 기관지 『TTC Report』에 게재
- ② 회원외 : 수시보도

2. 책임의 소재

TTC표준적합을 표시한 단말기(시스템) 품질의 보증, TTC표준등 실장의 범위, 불만 등의 대응등, 제품에 관한 책임은 제조업자등에게 있음을 명확하게 한다.

3. 확인료

원칙으로 무료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실비를 징수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한다.

4.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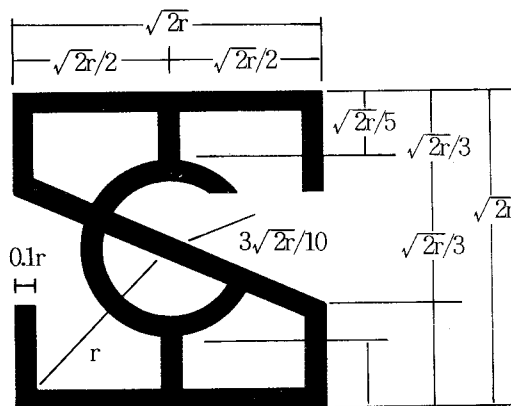
TTC는 TTC표준적합을 표시한 단말기(시

• 책임의 소재
 본 단말기(시스템)의 품질 보증, TTC표준등의 실장범위, 불만에의 대응등 제품에 관한 책임은 모두 당사에게 있습니다.

| TTC 가입란 | | | |
|------------|-------|-----------|---|
| 접 수 년월일 | 년 월 일 | 접 수 번호 | 구 분 |
| | | | (사) 전신전화기술위원회 이사장 秋山龍印 (일본공업규격 A열 4번) |

- 주 1: 법인의 경우는 본사 또는 주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할 것.
- 주 2: 법인의 경우는 상호 또는 명칭 및 대표자 명을 기재할 것.
- 주 3: 기술기준적합인정에 기재한 형식 또는 명칭을 기입할 것.
- 주 4: 해당 □에 “ ”를 표시하고, 문장에 의한 경우는 문장의 내용을 기입할 것.
- 주 5: 기술기준적합인정의 번호를 기입. 부득이한 경우는, (재) 전기통신단말기기심사협회의 접수 년월일을 기입하되, 기술기준적합인정을 받은 즉시,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
- 주 6: 상호접속시험에 사용한 상호접속시험실시 지침서의 명칭을 기재할 것.
- 주 7: TTC 표준등에 관한 상호접속시험실시 지침서로 정한 항목 일체를, 별지를 첨가해 그 시험결과를 기재할 것.
- 주 8: 본 신고서는 2통(정부)을 제출하고, 내용 확인 상 TTC 가입란에 필요사항을 기입하여 반송한다.

[표 2]



(상표등록 출제중)

※ 참고 상호접속시험실시 지침서 작성절차

상호접속시험실시 지침서의 작성 요망

| 요망원 | | |
|------------------------------------|-------------------|--------|
| 회원 | | 이외의 회원 |
| 해당 TTC 표준관련의 부문위원회에 소속된 전문위원회 구성회원 | 왼쪽에 기술한 회원 이외의 회원 | |

표준화회의제적 제1안관련

표준화회의규정 제11안관련

사 부 국 관 리

| | | |
|--------------|--|--------------------------------------|
| 전 문 위 원 회 | 상호접속시험실시 지침서의 기술적 검토 (관련표준의 지정을 포함) | 필요에 따라 적당 부문위원회 심사 및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는다. |
|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0%;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기술적문제가 없는가,</div> OK | NO |

상호접속시험실시 지침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 | |
|--------------|-----|
| 부 문 위 원 회 | 심 사 |
|--------------|-----|

| | |
|--------------|-----|
| 전 문 위 원 회 | 조 정 |
|--------------|-----|

표준화회의 의장결정

| | |
|-----|---|
| 주 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화회의 위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
|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TTC지정표준을 표준화회의 의장결정후, TTC표준안사전설명회가 근간에 개최된 경우, 사전설명회의 개요를 설명한다.</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호접속시험실시 지침서를 출판한다. |